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794호
2023년 6월 1일
목요일

훈 령

○ 훈 령 제 410 호 남동구 건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교 통 행 정 과 2

공 고

○ 공 고 제 1077 호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참가자 모집 식 품 위 생 과 11
공고
○ 공 고 제 109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20
처리 공고
○ 공 고 제 1096 호 2023년 6월 등록면허세 공시송달 세 무 1 과 21
○ 공 고 제 1098 호 취득세 6월 공시송달 세 무 1 과 23

고 시

○ 고 시 제 64 호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세 무 1 과 26
○ 고 시 제 65 호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세 무 1 과 27
○ 고 시 제 6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28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훈 령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1일

남동구 훈령 제410호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규정은 도로교통법 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차위반차량”을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으로 한다.

제3조 중 “1개업체”를 각각 “1개 업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대이상”을 “40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제3호에 의거”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3호”를 “제1항제2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견인차”를 “견인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통”을 각각 “1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행업체가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8항제1호 중 “제7항 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차계약용)”을 “(임대차계약용)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통”을 “1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요구할 시는 근무시간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로, “견인요구”를 “견인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1.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례 등 준수

제8조제1항 전단 중 “구역내에서”를 “구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중 인천광역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용인감“ 이라한다”를 ““사용인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견인대행구역내에”를 “견인대행구역 내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록 、관리”를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제2항에 따라”로, “견인차량 보관소”를 “견인차량보관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파손·훼손여부”를

“파손·훼손 여부”로, “사진촬영등”을 “사진촬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견인차””를 ““피견인차””로, “견인중에”를 “견인 중에”로, “견인장착중”을 “견인장착 중”으로, “하기전”을 “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반환시까지”를 “반환 시까지”로 한다.

제11조제8항 중 “사용자등”을 “사용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8항에 따라”로, “사용자등”을 “사용자 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사용자등이”를 “사용자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제10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0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용자등으로부터 견인·보관”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견인·보관”으로, ““소요비용””을 ““소요비용””으로, “사용자등의”를 “사용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1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모든손해”를 “모든 손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조의5 제3항 규정”을 “손해 배상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으로, “가입”을 “가입하거나 관할 공탁기관에 공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에서 사용자등”을 “제11조제11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사용자 등”으로,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방법에 의거 부과·징수한다”를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기준중”을 “산정기준 중”으로, “사용자등”을 “사용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매월2회”를 “매월 2회”로, “지급 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

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시”를 “지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행업무수행과”를 “대행업무 수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서류등”을 “서류 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대행업체간에”를 “대행업체 간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행업 지정 취소·정지 등의 기준(제16조제3항 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위반
제16조 제1항	경고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주차위반 차량 견인이동처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주차위반단속			주차위반 차량			견인이동.보관		
	단속일	단속기관	단속장소	차량등록번호	차종(차명)	증거번호	현장 이동일시	보관소 도착일시	이동거리
									km
									km
									km
									km
									km
									km
									km
									km
									km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

(제 호)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앞 노상
위반차량	차종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 주·정차 위반
취 급 자	남동구 대행업체
인수장소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귀하의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 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따라 소요 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장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약도)

-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구 분		견 인 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최초 30분까지 1,000원, 매 15분당 500원 추가
	소형·중형·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중형·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70,000원	

※ 보관료는 보관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후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하고, 조문의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견인료 소요 비용 산정기준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세분화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
 - 거리에 따른 견인료 추가 요금 폐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77호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참가자 모집

남동구 대표 관광명소인 소래포구의 수산물(새우, 꽃게 등)을 활용한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6. 1.
남 동 구 청 장

I 대회 개요

- 참가자격: 전국민 누구나
- 경연주제: 소래포구 수산물(새우, 꽃게 등)을 활용한 음식
- 진행방법
 - 예선: 서류심사, 본선 진출자 20개팀 선정 및 개별 통보
 - 접수기간: 2023. 6. 1.(목)~7. 31.(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방법: 서류심사
 - 본선진출자 발표: 2023. 8. 18.(금)
 - 본선: 현장 심사, 고득점 순으로 총 9개팀 선정
 - 일시: 2023. 9. 15.(금) 09:00~14:30
 - 장소: 소래포구축제 행사장(해오름공원 일원)
 - 방법: 현장에서 만든 음식(전시용, 시식용 구분하여 출품)
 - ※ 팀별 20인분 출품(전시용 4인분, 시식용 16인분)

- 참여인원: 2인 이내
- 심사기준: 맛과 향, 작품성, 독창성, 대중성, 상품성 등
- 시 상: 9개팀 (총 시상금 920만원)

분 야	인원(팀)	시상 내용	훈 격
대 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식약처장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금 (각 140만원)	인천시장
우 수 상	2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남동구청장
장 려 상	4	상장 및 상금 (각 60만원)	남동구의장

II 참가 안내

1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3. 6. 1.(목)~7. 31.(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e-mail)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이메일: jee8397@korea.kr 또는 sssong82@korea.kr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032-453-8470)
 - 방문·우편: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식품진흥팀
- 제출서류: ①참가신청서 ②참가작품 레시피 ③참가작품 사진(총 4매, 단계별사진)
④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통장사본(본선 진출자)

2

참가자 지원·유의사항

- 지원사항
 - 조리 테이블, 가열기구(버너), 물, 전기, 앞치마, 위생모
※ 본선 참가팀 재료비 제공(50만원, 행사 후 계좌이체)
- 개별 준비사항
 - 신분증, 위생복(상의 흰색), 마스크
 - 요리 재료, 조리도구 일체, 지원 사항 이외 요리 및 테이블 세팅에 필요한 물품은 각 팀에서 별도 준비

- ※ 행사장이 야외인 관계로 별도의 수도시설이 없음을 감안하여 준비
- 출품작 전시용(4인분) 및 시식용(16인분) 제출(팀별 총 20인분)
- ※ 시식용 음식 미 준비 시 재료비 지급 불가

○ 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 규정[서식1]을 숙지하여야 함.
- 예선은 레시피에 의한 서면 심사이므로 자세하고 정확히 작성.
- 세척, 절단, 숙성 등 전처리 재료는 미리 준비하되 현장 요리를 원칙으로 행사장에서 요리 후 세팅하여 출품하여야 함.
-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품 요리는 반환되지 않으며, 출품작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남동구에 귀속되고 음식점 보급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문의사항: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진흥팀 (☎032-453-8470)

접수번호		-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			
2023 - 호 (접수순)					
요 리 명		참 가 신 청 서			
참 가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공 동 참 여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서식 1] (뒤쪽)

참가 규정

1. 참가신청서 제출은 자동적으로 경연대회 참가 규정에 동의함을 의미하므로, 경연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참가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2. 모든 참가작품의 저작권, 소유권, 활용권은 주최(남동구) 측에 귀속되며 레시피 보급 등 홍보에 사용된다.
3.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참가자는 실격 처리된다.
4. 대회 주제는 수산물을 소재로 한 음식으로 주재료는 수산물로 한다.
5. 참가자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 레시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6. 참가 신청 내용과 출품내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대회 10일 전까지 주최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전시품, 장비, 용구, 개인 소지품의 손상이나 분실과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전시품은 심사가 끝나고 시상식까지 전시하여야 한다.
10. 참가자는 완성된 요리작품을 심사 전 전시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
11. 모든 참가자는 청결한 위생복(상의 흰색)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12. 본선 참가자는 공동 참여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참여한다.
13. 본선 참가자는 출품 음식(4인분)과 시식용 음식(16인분)을 준비하여야 한다.
14. 출품 음식 전시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작품장식, 작품전시용 그릇은 본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15. 경연 시에 정해진 인원 이외 추가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6. 참가팀은 심사위원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하며 심사에 대한 어떠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7. 경연대회 출품 음식은 남동구 또는 타지역 요리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출품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상 작품이 다른 요리대회 등에서 수상하였을 경우 본 시상을 취소한다.
18. 상금은 대표자 본인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행사 종료 이후에 지급한다.
19. 본선 경연 시 뜨거운 요리, 사전 조리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본소스, 육수, 반죽을 가져오는 것은 허용
 - 수산물, 채소의 경우 80%정도 손질 가능, 20% 정도는 현장 조리

[서식 2]

-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

참 가 작 품 레 시 피

참 가 자 명	
출품 음식 명	
재료 및 분량 (1인 기준, 정확히 기재)	재료의 소요량(cm, kg, g, ℓ, ml) 표시
조 리 방 법 (자세히 설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작품의 특징 등 설명	※ 작품설명 시 별지 사용 가능 ■ 요리의 특징

[서식 3] (앞쪽)

경연대회 참가작품 사진	
참가자명	
출품음식명	
요리사진 (준비단계)	
요리사진 (조리단계)	

[서식 3] (뒤쪽)

경연대회 참가작품 사진	
요리사진 (완성)	
요리사진 (완성)	

[서식 4]

-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참가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보유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남동구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통장사본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운영(서류심사, 결과 통보, 현장 경연, 재료비 또는 상금 지급)	참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경연 대회 1개월 후까지

※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참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위의 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_____ (서명)

성명 _____ (서명)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9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3항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6. 1.
3. 근 거 법 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4. 공 고 기 간 : 2023. 6. 1. ~ 2023. 6. 15.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미용업	2020-24	어벤져'헤어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4번길 46, 103호(구월동, 인스태이션)	사업자등록 폐업 (말소)	2023-02-15	2023-06-01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 (032)453-2634

2023. 6. 1.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96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 합**회**중**노**법**
- 서류의 송달지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등록면허세 독촉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 등록면허세 독촉분 고지서

위 서류를 귀 법인에게 송달하고자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23.5.31.을 2023.6.30.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등록면허세 독촉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1	120112-*****	합**회**중** 노**법**	28200	114002-2023-03-2 -700-013946	등록면허세 (등록)	독촉분	2023-05-10	수취인,주소,거소, 영업소 불명	306,46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98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대	상	신**희 외 18인 (중복 제외)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 6. 1.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등기번호	비고
1	970929-*****	신**희	28200	101501 2023 05 2 510 016091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2023-05-11	수령인없음	1,131,490	1072885665505	
2	540310-*****	강**묵	28200	101501 2023 05 2 550 011233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2023-05-11	수령인없음	5,200,990	1072895151606	
3	911126-*****	배**림	28201	101501 2023 05 2 551 016117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2023-05-11	수령인없음	1,735,630	1072885665506	
4	570122-*****	박**성	28202	101501 2023 05 2 660 021729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2023-05-11	수령인없음	92,260	1072895151617	
5	600214-*****	박**수	28203	101501 2023 03 2 510 000008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5-11	수취인, 주소,거소, 영업소불명	3,266,750	1072895151619	
6	571107-*****	유**숙	28204	101501 2023 03 2 522 001187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5-11	수령인없음	1,294,960	1072885665584	
7	820831-*****	이**준	28205	101501 2023 03 2 540 005969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5-11	수령인없음	1,678,650	1072885665582	
8	571107-*****	유**숙	28206	101501 2023 03 2 550 001189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5-11	수령인없음	4,182,100	1072885665585	
9	571107-*****	유**숙	28207	101501 2023 03 2 551 001195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5-11	수령인없음	2,479,920	1072885665586	
10	710218-*****	유**금	28208	101501 2023 03 2 650 005973	취득세(부동산)	독촉분	2023-05-11	수령인없음	377,160	1072885665594	

공시송달 내역(과세예고 통지)

연번	주민번호	납세자명	송달내용	등기번호	공고사유	비고
1	620726-*****	김**숙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93	폐문부재	
2	420221-*****	이**덕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1	보관기간경과	
3	650913-*****	김**호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91	보관기간 경과 반송 -특수실 등록	
4	640201-*****	노**희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2	보관기간경과	
5	710201-*****	이**원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78	폐문부재	
6	350910-*****	지**숙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8	보관기간경과	
7	491105-*****	김**자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79	보관기간경과	
8	440813-*****	김**관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7	수취거절	
9	550226-*****	원**애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6	수취거절	
10	890613-*****	김**서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생애최초)	1072895151521	보관일경과반송	
11	781108-*****	N*E*H*M*L*V*A*K*O*N*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다주택증과)	1072895151519	수취인불명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64호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

남 동 구 청 장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 가. 건물신축가액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 나.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①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및 가감산율
- 다. 오피스텔 외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65호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6. 1.

남 동 구 청 장

1. 기준가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13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가격

2. 변경결정항목

(단위:건)

구분	합계	조정내역		
		신규	변경	삭제
합계	152	83	56	13
차 량	105	38	55	12
기계장비	2	2	-	-
항공기	1	-	1	-
에너지공급시설	44	43	-	1

3.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66호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41번길 43 (논현동) 외 1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 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41번길 43 (논현동)	2009.11.16.	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6.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고잔로41번길 43 기초구간에위치하여43을 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2 (서창동)	2014.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3.6.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방산로158번길 12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를 건물번호로부여	